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
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완석

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6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5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 및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)

다.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
라.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 및 이전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같은 법 제46조는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, 이전공공기관, 그 밖의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 및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, 기업, 대학에 대해 재정적·행정적 사항 등에 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.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.
 -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위원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.
 - 안 제13조는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입지지원, 이전 지원, 대부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0. 5. 22.~'20. 6. 1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입지, 이전 지원 등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입지, 이전, 기반시설 등의 지원에

대하여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